

의안 번호	제2549~2552호
----------	-------------

2024. 10. 25.(금) 11:00
제3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안 건
총 4건(개정안 4) : 붙임 참조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보 고 총 괄

I 심사대상 안건

- 의안번호 제2549호 :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550호 : 장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551호 :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552호 :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I 심 사 경 과

의안번호	제 출 일	제 출 자 (발 의 자)	회 부 일	상 정 일 (제1차 행자위)
제2549호	2024. 10. 10.	장성군수	2024. 10. 11.	2024. 10. 23
제2550호	2024. 10. 10.	장성군수	2024. 10. 11.	2024. 10. 23
제2551호	2024. 10. 10.	장성군수	2024. 10. 11.	2024. 10. 23
제2552호	2024. 10. 10.	장성군수	2024. 10. 11.	2024. 10. 23

III 심 사 결 과

안 건	심사결과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4. 10. 10.
- 제출자 : 장성군수(총무과장)
- 회부일자 : 2024. 10. 11.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0. 23.(제36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장성군 BI가 변경됨에 따라 형태 및 의미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변경된 BI의 형태 및 의미 반영(안 제3조제3호, 별표 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장성군 BI가 변경됨에 따라 형태 및 의미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4. 10. 10.
- 제출자 : 장성군수(민원봉사과장)
- 회부일자 : 2024. 10. 11.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0. 23.(제36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건축물 해체 허가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과도한 규제 정비 의견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완화(안 제9조제1항)
 - (현행) 건축물 대지경계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설치된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 (개정)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 1.5배 이내의 버스 정류장,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다만, 높이 5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 허가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과도한 규제 정비 의견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4. 10. 10.
- 제출자 : 장성군수(주민복지과장)
- 회부일자 : 2024. 10. 11.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0. 23.(제36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사회복지증진 및 노인·장애인 복지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5조의2)
 - (현행) 2024년 12월 31일 ➡ (개정) 2029년 12월 31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사회복지증진 및 노인·장애인 복지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4 /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4. 10. 10.
- 제출자 : 장성군수(세무회계과장)
- 회부일자 : 2024. 10. 11.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0. 23.(제36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 완화 적용하고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른 용어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공유재산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금액 변경(안 제63조)
- 법령·자치법규 간 통일성 확보 및 장애인 비하 용어 개선(안 제47조 및 별표)
- (현행) 장애자용 화장실 ⇨ (개정) 장애인용 화장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 완화 적용하고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른 용어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 번호	제2553호
----------	--------

2024. 10. 25.(금) 11:00
제3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안 건
총 1건(제정 조례안 1) : 붙임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 총괄

I 심사대상 안건

○ 의안번호 제2553호 : 장성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II 심 사 경 과

의안번호	제 출 일	제 출 자 (발 의 자)	회 부 일	상 정 일 (제1차 산건위)
제2553호	2024. 10. 10.	장 성 군 수 (재난안전과장)	2024. 10. 11.	2024. 10. 24.

III 심 사 결 과

안 건	심사결과
장성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원안가결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4. 10. 10.
- 제 출 자 : 장성군수(재난안전과)
- 회부일자 : 2024. 10. 11.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0. 24.(제36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우리 군에 배분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의 세입과 세출을 명확히 하기 위함.

【주요내용】

- 특별회계의 목적 (안 제1조)
-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안 제2조 ·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